
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요강

2024. 5.



대한체육회
Korean Sport & Olympic Committee

목 차

1. 공모개요	1
2. 공모대상	1
3. 공모 신청방법	4
4. 예산지원 항목	5
5. 심사절차	6
6. 지원금 산정방법	8
7. 예산지원 방식	8
8. 예산교부 조건	9
9. 기타 안내사항	10

1. 공모개요

○ 사업명: 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

※ 2024년 공모 달라진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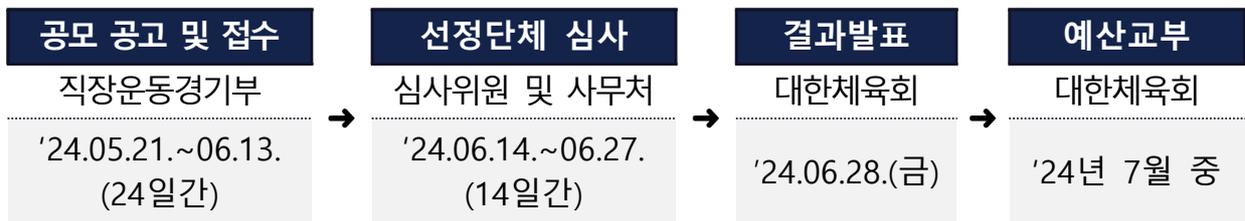
- [폐지] 우선 공모 - 지방체육회 대상 우선 공모를 폐지하고, 일반 공모만 실시
[운영 팀 수에 따른 가산점(최대 5점)으로 전환]
- [신설] 종목별 지원액 차등 신설 - 올림픽,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에 1천만 원 추가 지원

○ 사업기간: 2024년 5월 ~ 12월(총 8개월)

○ 공모대상: 전국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

○ 지원금액: 종목 및 팀 선수 수에 따라 2천만 원 ~ 최대 6천만 원

○ 공모절차 및 일정



○ 재원: 국민체육진흥기금-주최단체 지원

2. 공모대상

○ 지원대상: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

- 운영단체: 지방체육단체(시도·시군구체육회, 시도·시군구종목단체)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일반기업 등

※ 동호회, 무소속, 개인 활동 팀 공모 신청 불가

○ 공모구분: '일반 공모' 만 실시

※ 2023년과 달라진 점: 우선 공모 폐지, 일괄 일반 공모로 실시

○ 공모신청 가능종목

※ 공모신청 가능종목 기준에 대한 날짜는 대한체육회 공모 공고일로 함

- 2024년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

<개인종목> (39)	올림픽대회(21)	양궁, 육상, 배드민턴, 복싱, 카누, 자전거(사이클), 승마, 펜싱, 체조, 유도, 근대5종, 조정, 요트, 사격, 탁구, 태권도, 테니스, 철인3종, 수영, 역도, 레슬링
	아시아경기대회(4)	산악(스포츠클라이밍), 스퀘시, 우슈, 댄스스포츠(브레이킹)
	그 외(14)	검도, 궁도, 당구, 롤러, 바둑, 볼링, 소프트테니스, 수상스키웨이크 보드, 씨름, 에어로빅, 택견, 핀수영, 보디빌딩, 합기도
<단체종목> (7)	올림픽대회(3)	핸드볼, 하키, 수영(수구)
	아시아경기대회(3)	럭비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
	그 외(1)	족구

* 공모신청 불가종목(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): 축구, 농구, 야구, 배구, 골프

* 대회기준: 제105회 전국체육대회,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, 제20회 아이치-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

○ 공모 자격요건 * **4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**

가. 선수 및 지도자와 고용계약서*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

* 근로계약서, 비전속계약서(프리랜서 계약서 등)로 계약한 경우만 인정
(전국체전 출전 대비 수당 지급 약정서, 우수선수 수당 약정서 등은 인정 불가)

나. 선수 및 지도자의 구성이 일정 인원을 충족한 팀

- 개인종목: (최소) 지도자 1명*, 선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
 - 단체종목: (최소) 지도자 1명, 경기진행 가능 인원의 1.5배 이상으로 구성된 팀
- * 플레잉코치도 지도자로 인정, 남자, 여자팀 동시 운영 시 지도자 중복 인정
(단, 지도자가 한시적 공석 및 채용 중인 경우, 지도자 채용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)

다.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가능한 팀

**라. 공고일 기준,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팀 등록이 되어있으며,
스포츠지원포털 내 팀 등록 및 선수 등록이 완료된 팀**

※ 2025년 공모 자격요건 변경 예고

- 2025년부터 운영 지원 공모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3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팀에 한하여 공모 신청이 가능함

○ 공모신청 제외대상 * 하나라도 해당될 시, 지원 불가

가.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각종 비위 사건(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5조 징계대상 제1항 해당)이 발생하여 내·외부 불문하고 확정된 징계사실이 있는 팀

※ 단체 단위가 아닌 팀(종목) 단위로 제외함

- 비위 사건으로 선수나 지도자의 징계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, 당시 징계자가 현재 퇴사하였더라도 제외함

나. 2023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사업 및 대한체육회가 지원하고 있는 타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팀
(추후 중복 지원 확인 시 예산 불인정·환수 조치)

- 국가대표 강화훈련, 각종 포상금 지원은 중복 사업 미해당

다. 지난 3년 간 정부 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후, 부적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단체

라. 2023년 동 사업 지원 예산의 30% 이상을 불용한 팀

- 2023년에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창단·운영 지원 예산 모두 포함

마. 기타 공고문 상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팀

※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5조(징계대상) 제1항

1.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, 횡령 배임, 회계부정, 직권 남용,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
2. 체육 관련 입학비리 3. 폭력, 성폭력 4. 승부조작, 편파판정
5. 음주운전, 강화 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, 불법도박
6.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
7. 부정 참가,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
- 7의2. 인권 침해, 괴롭힘 7의3. 선거 관련 비위행위
8.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

3.

공모 신청방법

- 신청방법: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 - ※ 1개 단체가 여러 팀을 신청할 경우, 팀별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
- 제출방법: 공문 전자문서 혹은 이메일(wst@sports.or.kr) 제출
 - ※ 공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용량이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는 이메일 제출
- 제출서류

연번	제출자료명	비고
1	공모 신청서	
2	선수단 징계 부존재 확인서	
3	공모계획서	
증빙①	2024년 근로계약서(지도자, 선수 모두)	(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)
증빙②	표준 계약서 및 운영규정	
증빙③	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명단 및 회의자료	해당 시 제출
증빙④	2024년 팀 운영 사업계획	(예산 내역 포함 자료)
증빙⑤	기타 증빙자료	(필요할 경우 제출)

- 신청금액: 팀별 선수 수에 비례하여, 신청 가능 한도에 따라 예산 신청 금액을 팀별로 설정하여 신청
 - 신청가능한도

1) 하계종목 중 올림픽·아시아경기대회 종목

구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
선수 수	11명 이상	8~10명	5~7명	2~4명
예산 신청 가능 한도	60,000천원	50,000천원	40,000천원	30,000천원

2) 하계종목 중 그 외 전국체육대회 종목

구분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
선수 수	11명 이상	8~10명	5~7명	2~4명
예산 신청 가능 한도	50,000천원	40,000천원	30,000천원	20,000천원

4. 예산지원 항목

○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훈련을 위한 예산

가. 훈련용품, 훈련기구, 의료용품

- 대회 및 훈련에 필요한 용품, 기구
- 테이프, 붕대, 파스 등 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의료용품(의료기구 제외)

나. 우수지도자, 트레이너, 통역요원 수당(고용계약 불가)

-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우수지도자*, 트레이너, 통역요원 수당 지급

* 우수지도자는 기존 지도자 외 단기적으로 훈련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한정함(국내, 해외)

- 1명당 최대 60일 내(또는 국외전지훈련 기간 중)에서 수당 지급 가능

다. 국내·외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

-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한 항공료, 체재비(숙박비, 식비, 일비 등), 시설 사용료(훈련장 등록비 포함), 차량 임차, 대회 참가 등록비, 각종 물품운송료, 대회 입장권 등

※ 신청 불가 항목

① 훈련용품 중 지원 불가 항목

- 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품(영상장비, 컴퓨터, 모니터 등)
- 전자기기성 훈련용품(스마트워치 등)
- 의료기구(마사지건, 고주파 마사지 치료기 등) 불가

② 인건비(고용계약에 의한 인건비)

- 지도자 및 선수 급여, 선수 영입비, 훈련 수당, 대회출전 수당 지급 불가

③ 업무회의비, 특근매식비

- 사업추진비, 기관업무비 등 별도의 회의비 예산 편성 불가

④ 훈련과 관련 없는 행사 개최, 물품 구매 및 자산 취득 등

- 워크숍,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예산 불가
- 훈련복 이외의 평상복 피복 구매 불가, 스포츠마사지, 목욕 비용 지원 불가

5. 심사절차

- 심사방법: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지표에 따라 심사 * 심사항목 7쪽 참조
- 평가지표: 4개 영역(13세부항목) 총 100점으로 구성(정성·정량 평가)
 - 운영계획(30점), 인권친화문화 조성노력(55점), 선수단 실적(5점), 사회 공헌 노력(10점) * 세부지표 붙임① 참조

※ 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운영계획→②인권친화문화 조성 노력→③선수단 실적→④사회공헌 노력 영역 고득점 순으로 최종 최후순위 지원 단체를 결정함

- 평가지표 외 기타사항에 대하여 가점·감점

가. 가점사항: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수에 따른 가점

- 공모신청 단체의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수

※ 팀의 선수 전원과 고용계약(근로계약 혹은 프리랜서)을 체결한 팀만 인정

구분	4팀 이상	7팀 이상	10팀 이상
배점	1점	3점	5점

나. 감점사항: '18~'22년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정산 및 반납 미완료 단체

- 각 단체별 직접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 미완료 단체 감점표

구분	정산 및 반납 미완료 1회	정산 및 반납 미완료 2회 이상
배점	-1점	-3점

다. 감점사항: 2023년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평가 결과 '미흡' 팀

- 지원 사업 평가결과 '미흡' 팀 감점표

구분	미흡 1팀	미흡 2팀	미흡 3팀 이상
배점	-1점	-2점	-3점

- 선정방법: 심사점수를 총 합산(100점 만점)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000팀을 선정
- 적격기준: 사업계획 **심사 결과 총 60점 이상을 획득**한 팀

※ 최종점수 60점 미만 팀은 예산 범위 내에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

영역	항목	배점	세부내용
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 (30점)	(1-1) 운영 관련 계획	10점 (비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추진 계획 적절성, 예산 확보 방안, 운영인력 현황 등 평가
	(1-2) 예산 관련 계획	5점 (비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체 예산 및 공모 신청 예산 내역의 차별성, 예산 편성 내역 등 평가
	(1-3) 경기력 향상 목표 설정, 훈련 및 대회 출전 계획	10점 (비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수단 경기력 향상 목표의 적절성, 연간 훈련계획, 대회 출전 계획 등 평가
	(1-4) 훈련장,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계획	5점 (비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훈련장, 합숙소 운영여부, 운영 수준, 안전관리 계획 수립여부 등 평가
② 인권친화문화 조성 노력 (55점)	(2-1) 선수단 계약 방식 및 기간	5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 단체가 선수와 맺은 계약 방식 및 기간 등 평가
	(2-2)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	20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팀에서 활용 중인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와 부합하는지 평가
	(2-3) 표준운영규정 준수 여부	15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계된 규정이 법령으로 정한 운영 규정과 부합하는지 평가
	(2-4)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운영 실적 *24년 신규지표	5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가 구성되었는지, 실제 운영하였는지를 평가
	(2-5) 비위 행위 예방 계획 및 사후 대응 시스템	5점 (비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비위 행위 예방 계획 및 사후 대응 시스템의 적절성, 기대효과 평가
	(2-6)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	5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간(2022, 2023년) 선수단대상 각종 비위 행위 예방 교육 추진 실적평가
③ 선수단 실적 (5점)	(3-1) 국가대표 선수 확보 실적	5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 신청 팀의 국가대표 선수 확보 실적 평가
④ 사회공헌 노력 (10점)	(4-1) 사회 기여 방안	5점 (비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 기여 방안 계획 적절성 평가
	(4-2) 지역 출신 선수 육성	5점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공모 신청 팀 기준, 지역 출신 선수 영입 비율 평가

※ 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 → ②인권 친화 문화 조성 노력 → ③선수단 실적 → ④사회 공헌 노력 고득점 순으로 최종 최후순위 지원 단체를 결정함

6. 지원금 산정 방법

- 신청예산: 종목 및 팀 선수 수에 따라 2천만 원 ~ 최대 6천만 원
- 최종 지원금 = 신청 예산 × 심사 점수에 따른 지원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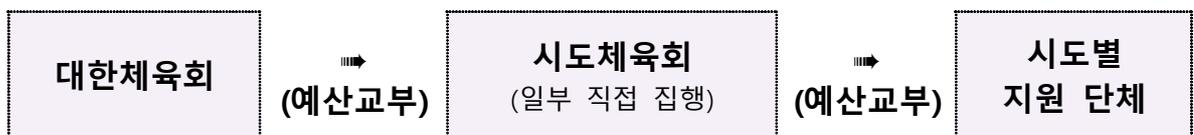
심사 점수	100~90점	89~80점	79~70점	69~60점
지원 비율	100%	95%	90%	85%

※ 전체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후 순위를 기록한 팀은 최종 선정 금액보다 적은 잔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(해당 단체 최종 지원 금액의 70% 이상일 때만 지원)

7. 예산 지원 방식

- 대한체육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팀을 시도별로 그룹화하여 시도별 예산 총액을 시도체육회에 교부함
- 시도체육회는 교부 받은 예산 중 시도체육회 지원금은 직접 집행하고, 소관 시군구체육회 및 지자체 등의 지원 예산은 해당단체에 재교부함
 -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원대상인 동시에 보조사업자로서 각 시도 내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 재교부, 승인, 관리, 정산 등 행정처리(회계검토는 회계법인에서 처리) 역할을 수행함

<하계종목 예산 지원 흐름도>



8.

예산교부 조건

- 예산 지원 시, 대한체육회가 진행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업(교육, 조사, 평가 등)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 비협조시 예산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공모 신청 단체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기 교부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며, 향후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- 지원 기간 중, 지원 팀 내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의거한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하거나 과거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중에 징계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, 즉시 해당 팀 예산 집행을 중지시키고 잔여 예산 반납 처리함(단, 사업 기간 내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확정된 경우 예산 집행 재개 허용)
- 공모 신청 후, 지원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
- 사업 정산은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실시하며, 사업 종료 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차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- 본 공모 심사 결과는 해당 팀에게만 통보하며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, 심사결과 등 심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받지 않음

9.

기타 안내사항

-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한체육회 홈페이지(www.sports.or.kr)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된 일정을 공지할 예정
-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, 제출자료 번호별 각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제출
- 공문(전자문서)을 통해 공모 신청 시, 첨부자료 용량이 초과할 경우 증빙자료만 별도로 이메일 제출 가능(신청 시 공문에 해당 내용 명시 및 공모 접수 기한 내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필요)
-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관련 문의처
 -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김수영 과장 sykim21@sports.or.kr, 02-2144-8207